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I . 재정공시 안내	3
II . 공통공시 총괄	4
III . 예산규모	
◆ 세입예산	5
◆ 세출예산	6
◆ 지역통합재정통계	7
IV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8
◆ 재정자주도	9
◆ 통합재정수지	10
V .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11
◆ 성인지 예산현황	12
◆ 주민참여예산현황	13
◆ 성과계획서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 국외여비 편성현황	20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V .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2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3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4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4

2019년 전라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28.

전라남도지사 (인)

◆ 우리 도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조 4,23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5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조 8,589억원)보다 1조 4,35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2,10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5조 4,86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7,269억원입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4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88%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 19.73%, 재정자주도 35.13%

◆ 우리 도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43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박종민(061-286-254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84,238	75,704	8,534	98,589	89,906	8,683
	세출예산	84,238	75,704	8,534	98,589	89,906	8,68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9.73	20.35	△0.62	36.93	39.03	△2.1
	재정자주도*	35.13	34.92	0.21	48.87	50.20	△1.33
	통합재정수지	243	△985	1,228	△426	△436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0	28	2	32	31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8	77	1	153	156	△3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개편 이전 자료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423,825	6,557,076	812,052	1,054,6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 특별회계(7개) :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광역교통시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 기 금(17개) : 환경보전, 통합관리, 지방채상환,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한옥발전, 관광진흥, 체육진흥, 재해구호, 양성평등,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역개발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671,298	6,884,896	7,429,337	7,570,449	8,423,8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6,557,076	100
지방세	843,000	15.40	928,000	16.70	983,000	17.21	1,023,000	16.94	1,090,000	16.62
세외수입	61,604	1.13	74,878	1.35	67,398	1.18	51,183	0.85	56,516	0.86
지방교부세	884,200	16.15	833,792	15.01	786,100	13.76	857,900	14.21	985,666	15.03
보조금	3,499,049	63.92	3,544,608	63.80	3,513,110	61.51	3,761,804	62.30	4,103,147	62.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138	3.40	174,306	3.14	361,613	6.33	344,229	5.70	321,747	4.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423,825	6,557,076	812,052	1,054,6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6,671,298	6,884,896	7,429,337	7,570,449	8,423,82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6,557,076	100
일 반 공 공 행 정	394,106	7.20	417,324	7.51	478,252	8.37	510,099	8.45	536,799	8.19
공공질서 및 안전	241,129	4.40	265,120	4.77	360,046	6.30	386,910	6.41	446,787	6.81
교 육	162,008	2.96	183,889	3.31	193,006	3.38	198,213	3.28	201,361	3.07
문 화 및 관 광	292,395	5.34	311,265	5.60	309,229	5.41	302,339	5.01	265,785	4.05
환 경 보 호	467,326	8.54	458,580	8.25	441,801	7.74	424,311	7.03	447,878	6.83
사 회 복 지	1,590,625	29.06	1,561,526	28.11	1,702,776	29.81	1,916,625	31.74	2,126,239	32.43
보 건	92,609	1.69	117,509	2.12	81,852	1.43	99,844	1.65	108,595	1.66
농 립 해 양 수 산	1,106,554	20.21	1,075,062	19.35	1,056,489	18.50	1,097,783	18.18	1,266,251	19.31
산 업 · 중 소 기 업	120,497	2.20	129,627	2.33	168,554	2.95	203,102	3.36	218,191	3.33
수 송 및 교 통	270,937	4.95	300,626	5.41	300,176	5.26	282,484	4.68	270,702	4.13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36,154	6.14	311,527	5.61	316,292	5.54	302,936	5.02	339,045	5.17
과 학 기 술	1,095	0.02	5,366	0.10	6,956	0.12	5,760	0.10	5,934	0.09
예 비 비	57,041	1.04	56,042	1.01	61,799	1.08	60,696	1.01	67,443	1.03
기 타	341,516	6.24	362,122	6.52	233,993	4.10	247,014	4.09	256,066	3.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전라남도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포함),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11,881,105	13,248,130	1,367,025	11.51
전 라 남 도	7,570,449	8,423,825	853,376	11.27
전라남도교육청	3,562,820	3,847,310	284,490	7.98
공 사 · 공 단	474,120	644,469	170,350	35.93
출자·출연기관	273,717	332,525	58,808	21.4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22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전남복지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남도장학회,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jeonnam.go.kr/new/budget/2019/>, 직속/사업소/유관기관)

- 전라남도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생활형SOC 구축, 중앙지원 공모사업 추진으로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전남개발공사의 만기 공사채 상환(1,450억)에 따라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35.9% 증가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73 (15.48)	6,401,876 (6,401,876)	1,263,063 (991,316)	5,088,813 (5,088,813)	50,000 (0)	0 (32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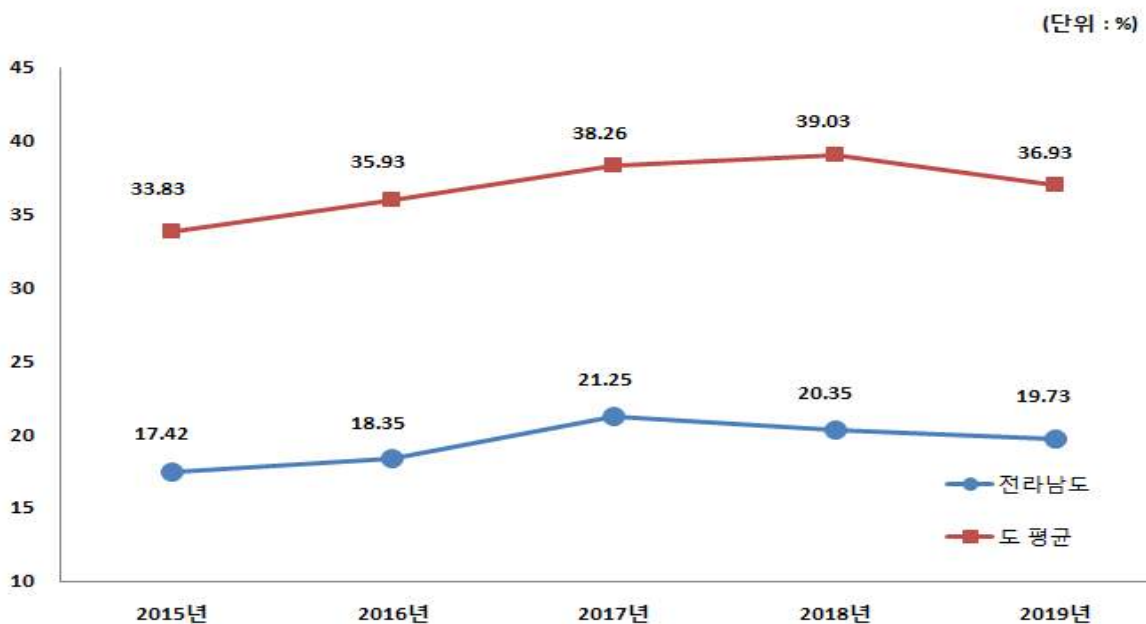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7.42 (14.49)	18.35 (15.96)	21.25 (16.30)	20.35 (15.70)	19.73 (15.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의 증가(64,651백만원/5.39%)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469,110백만원/10.15%) 폭이 커 전년대비 0.62% 재정자립도가 감소함.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13 (30.88)	6,401,876 (6,401,876)	2,248,729 (1,976,982)	4,103,147 (4,103,147)	50,000 (0)	0 (321,74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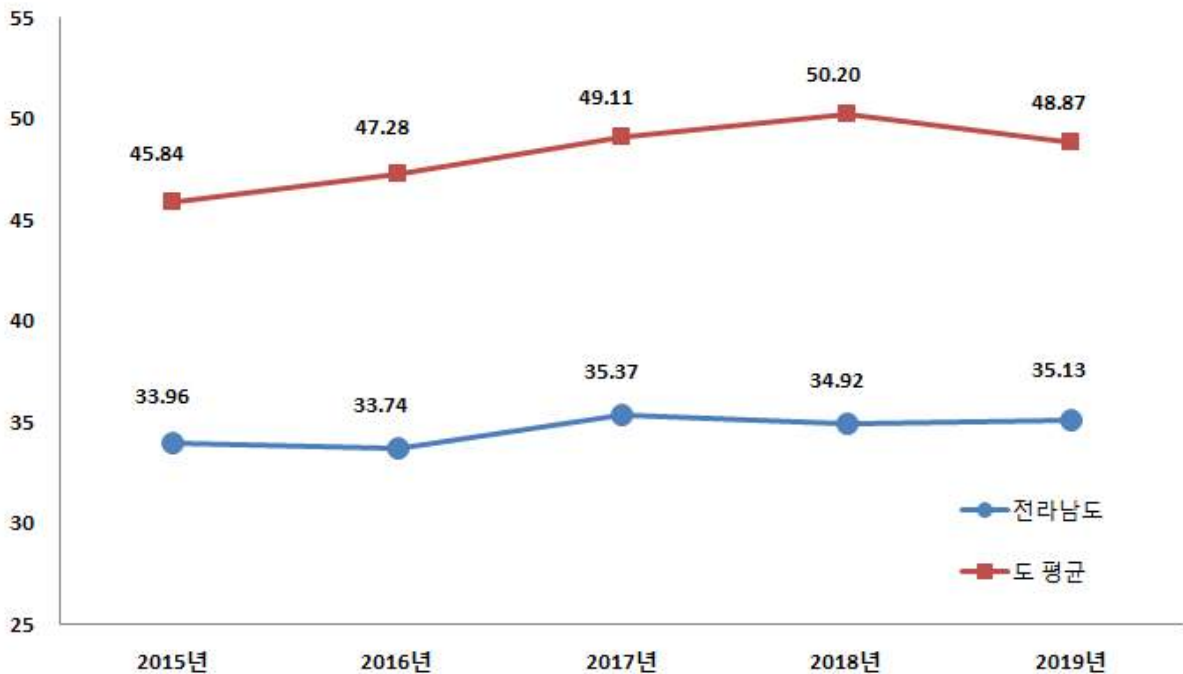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3.96 (31.04)	33.74 (31.35)	35.37 (30.41)	34.92 (30.27)	35.13 (30.8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이전재원 중 보조금의 증가(341,344백만원/9.07%) 보다 자주재원(자체세입, 지방교부세)의 증가(192,417백만원/9.36%) 폭이 커 전년대비 0.21% 재정자주도가 증가함.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780,625	6,949,586	287,945	303,900	15,955	209,248	6,965,541	△184,915	24,333
일반회계	6,319,076	6,110,340	5,000	2,000	△3,000	180,000	6,107,340	211,736	391,736
기 타 특별회계	434,797	809,052	0	0	0	29,248	809,052	△374,256	△345,007
기 금	26,753	30,194	282,945	301,900	18,955	0	49,149	△22,396	△22,396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세입(A) : 총 세입예산 - 지방채(600) - 보전수입(700)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 ▶ 지출(B) : 총 세출예산 - 용자및출자(500) - 보전수입(600) - 내부거래(700)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
- ▶ 용자회수(C) : 용자금원금수입(713) ▶ 용자지출(D) : 용자및출자(500)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 - 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45,175	△169,555	△303,080	△304,800	△184,915
통합재정수지 2	9,202	13,753	△206,339	△98,542	24,333

☞ 통합재정수지1은 일반회계의 세입여건개선에 따라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가 및 기금의 용자회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1,690억 개선된 반면, 특별회계 지출예산 증가로 전년대비 491억원 수지가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1,199억원 개선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82,197	8,821,937	9,039,636	9,304,004	9,684,382	45,532,156	2.80
자 체 수 입	1,297,363	1,329,812	1,338,686	1,348,339	1,358,956	6,673,156	1.20
이 전 수 입	5,544,474	5,745,570	5,905,336	6,086,292	6,328,226	29,609,898	3.40
지 방 채	226,075	232,857	239,842	247,038	254,449	1,200,261	3.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4,285	1,513,698	1,555,772	1,622,335	1,742,751	8,048,841	1.90
세 출	8,682,197	8,821,937	9,039,636	9,304,004	9,684,382	45,532,156	2.80
경 상 지 출	1,768,591	1,790,518	1,840,965	1,890,161	1,953,901	9,244,136	2.50
사 업 수 요	6,913,606	7,031,419	7,198,671	7,413,842	7,730,481	36,288,019	2.8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 ☞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예산과 당초예산이 다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19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예상액으로 2018년 최종예산에 3년간 평균 추가경정예산액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임.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도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8	442,859
여성정책추진사업	27	196,5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	231,8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14,496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인지 예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 부사업 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우리 도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557,076	-	18,824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8,82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책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758	신규사업
"	건강증진과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1,400	"
"	인구청년 정책관	사람 + 오디션	1,065	"
"	사회복지과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512	"
"	인구청년 정책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급	300	"
"	인구청년 정책관	신혼부부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450	"
"	일자리 정책과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2,000	"
"	사회적 경제과	마을공동체 씨앗단계 공모사업	240	"
"	스포츠 산업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경기장 신축 지원	2,000	"
"	도로관리 사업소	차선도색사업	2,609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530	"
"	도로관리 사업소	기준미달 재난 위험 교량 개축사업	1,000	"
"	섬해양 정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5,600	"
"	농식품 유통과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36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24	192	436	547	7,369,128	6,750,824	618,304
대 변 인	1	1	5	3	5,335	3,771	1,564
도 민 행 복 소 통 실	1	5	8	8	3,595	3,212	383
감 사 관	1	1	6	4	530	494	36
인 구 청 년 정 책 관	1	1	4	4	10,667	6,399	4,268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	5	12	13	537,679	470,655	67,024
국제협력관	1	4	9	5	7,043	6,766	277
기 업 도 시 담 당 관	1	3	8	7	51,122	62,866	△11,744
기획조정실	1	7	25	18	237,761	229,528	8,233
도민안전실	1	11	22	21	299,829	271,481	28,348
일자리정책 본 부	1	5	9	7	78,065	68,508	9,557
경제에너지국	1	9	23	22	100,717	81,414	19,303
관 광 문 화 체 육 국	1	13	25	40	260,529	239,955	20,574
보건복지국	1	11	24	38	2,153,672	1,937,430	216,242
농 축 산 식 품 국	1	12	30	49	856,953	871,881	△14,928
해양수산물국	1	11	18	28	364,365	247,618	116,747
건설교통국	1	9	23	27	491,893	445,388	46,505

실국명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자치행정국	1	15	35	31	769,893	755,508	14,385
소 방 본 부	1	20	44	63	481,552	408,139	73,413
의회사무처	1	1	3	5	8,424	6,484	1,940
농업기술원	1	12	30	26	48,536	42,242	6,294
공 무 원 교 육 원	1	1	3	2	9,139	11,377	△2,238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	3	10	16	3,604	3,201	403
동 부 지 역 본 부	1	13	22	41	572,941	560,305	12,636
해 양 수 산 기 술 원	1	19	38	69	15,284	16,202	△918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 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73	35.13	32.43	19.27	70.06	14.8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9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6	167	△6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43	1,681	△1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072	58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64	
	의원국외여비		226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	
지방보조금		49,818	40,867	△8,95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60	7,260	-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인	836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p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400,400천원) × (1+0.014) = 406,006천원

【편성내역】 예산증액 없이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 단체장(1인, 167,200천원) + 부단체장(2인, 116,600천원) = 400,4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총액한도】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①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초기준액(1,840,000천원)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0.04969×550,603천원) × 보정계수(0.1) = 1,842,736천원

【편성내역】 예산편성기준 상한액 1,842,736천원 중 1,681,000천원 편성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 [①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0.297)] + [②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0.176)] + [③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05)] + [④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① [(1,357,785천원÷3년)×(1 + 0.297)] + ② [(715,200천원÷3년)×(1 + 0.176)] + ③ [(565,500천원÷3년)×(1+0.05)] +④ [(15,000천원÷3년)×(1+0.297)] = 1,071,784천원

【편성내역】 의정운영공통경비(580,084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64,000천원) + 의원국외여비(226,20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1,500천원) = 1,071,784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총액한도】 보조금 총액한도 = ①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 + ②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③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①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47,033,605천원

②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7.47%

③ 전년대비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 : 5.92%

⇒ 47,033,605천원 × (1 + 0.0592) = 49,817,994천원

【편성내역】 예산편성기준 총한도액 **49,817,994천원** 중 **40,867,370천원**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도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32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8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총액한도】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 직원 수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1,320천원) × 직원 수(5,500명) = **7,260,000천원**

【편성내역】 공무원 맞춤형복지(1,100,000원 × 5,100명 = 5,610,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 × 400명 = 120,000천원) + 공무원단체 보장보험(300,000원 × 5,100명 = 1,530,000천원) = **7,260,000천원**

※ 제외항목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7,100천원) + 직원 건강검진(350,000원 × 1,400명 = 490,000천원) + 소방직 건강검진(869,200천원) = **1,366,3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편성방법】 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

【편성내역】 전남도 본청, 농업기술원 등 27개 기관(부서) **835,72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69,128	3,010	500	2,510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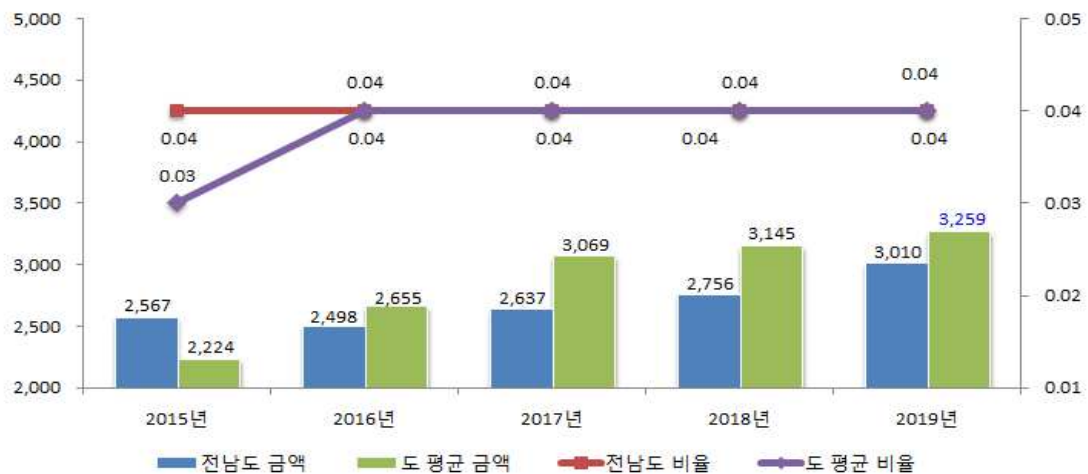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915,487	6,026,412	6,373,509	6,750,824	7,369,128
국외여비 총액 (B=C+D)	2,567	2,498	2,637	2,756	3,010
국외업무여비 (C)	399	392	382	407	500
국제화여비 (D)	2,168	2,106	2,256	2,349	2,510
비율	0.04	0.04	0.04	0.04	0.0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557,076	7,755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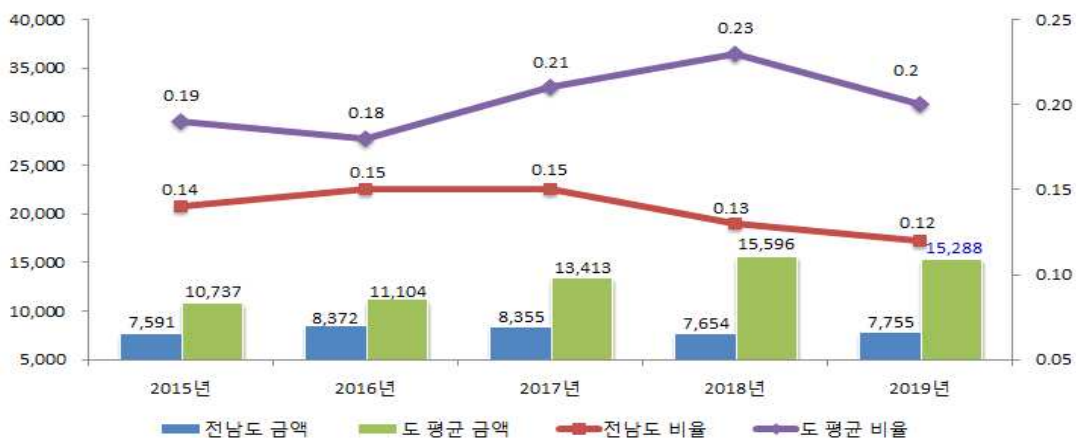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5,473,991	5,555,583	5,711,221	6,038,115	6,557,076
행사·축제경비	7,591	8,372	8,355	7,654	7,755
비율	0.14	0.15	0.15	0.13	0.1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644	△3,757
인건비 절감	1,876	1,334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30
업무추진비 절감	315	35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901	△1,8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452	△3,57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5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803	△7,22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41	△1,364
지방세 체납액 축소	△5,533	△6,101
경상세외수입 확충	587	1,98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	△765
탄력세율 적용	94	62
지방세 감면액 축소	△615	△1,046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9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9년에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63
재정집행 우수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43
경진대회 입상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공동체분야 ‘우수’	120
재정집행 우수	2018년 1분기 일자리사업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35
재정집행 우수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65
합동평가 우수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6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